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4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00.
제출자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속 및 직제명칭 변경
- 『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』 설치에 따른 정보산업협의회 구성등 행정적 지원을 통한 정보화촉진 및 지역정보 산업의 육성

2. 주요골자

-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속 및 직제명칭 변경(제7조 제3항, 제4항, 제10조 제3항)
 - 기획조정실장 ⇒ 자치행정국장
 - 정보화담당관 ⇒ 정보통신과장
-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제11조(기능)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6. 지역정보산업육성 지원

3. 의안전문 : 따로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붙임

5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3항중 “기획조정실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중 “정보화담당관”을 “정보통신과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6. 지역정보산업육성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·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 7조(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)	제7조(지역 정보화촉진 협의회)
①~② (생략)	①~②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은 <u>기획</u> <u>조정실장</u> 이 되며,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, 기업체, 학계, 언론, 금융, 민간단체등의 장, 부시장·부군수, 도의회의원, 업무관련 실· 국장 및 관할 지방체신청장으로 위원장이 임명·위촉하는 자로 한다	③ <u>자치</u> <u>행정국장</u>
④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<u>정보화담당관</u> 이 된다	④ <u>정보통신과장</u>
제10조(설치)	제10조(설치)
①~② (생략)	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역정보화본부장(이하“본부장”이라 한다) 은 <u>정보화담당관</u> 이 된다 (이하생략)	③ <u>정보통신과장</u>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기능)	제11조(기능)
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지역 정보산업육성 지원</u>